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0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66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9. 2. 선고 2015구합53170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2. 24.
판 결 선 고	2017. 3. 10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, ① 2015. 7. 16.에 한 재산세 4,534,560원, 지역자원시설세 1,632,780원, 지방교육세 709,980원의 각 부과처분, ② 2015. 8. 10.에 한 취득세 14,273,480원, 농어촌특별세 1,206,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01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필곤

판사 신숙희

판사 이승철